

시정명령의 종류(제39조제2항 관련)

의무내용	시정명령의 종류
1. 법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악물등 표시의무	표시명령, 표시방법 변경명령
2. 법 제14조(법 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악물등 포장의무	포장명령, 포장방법 변경명령
3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·진열 금지의무	전시·진열 금지명령
4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·진열 금지 의무	전시·진열 금지명령
5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·격리 의무	구분·격리 명령
6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시·진열 금지의무	전시·진열 금지명령
7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의 설치·부착·배포 금지의무	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,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,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
8.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류등의 판매·대여·배포 금지내용 표시의무	표시부착명령, 표시방법 변경명령
9.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·고용제한 표시의무	표시부착명령, 표시방법 변경명령